

## 22. 분담금 청구

### ☐ 분담금 청구

1. 원고에게, 피고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는 104,781,448원, 피고 제이여객자동차주식회사는 293,749,182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[참조판례]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은 육운진흥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같은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만든 같은 연합회 산하의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같은 연합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.(대법원 1991.11.22. 선고 91다16136 판결)

### ☐ 분담금 청구(기본형,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)

1. 원고에게, 피고 류일수, 류일숙, 류일재 와 피고(선정당사자) 선정자(이하에서는 피고 선정자라고만 한다)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3,626,067원, 피고 류일수, 류일숙, 류일재는 각 906,516원, 피고 선정자와 선정자 신일충, 같은 신일자는 각 1,208,68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.1.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[참조판례]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법적 성질(비법인사단)

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,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조합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명칭에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.(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다39721, 39738 판결)